NEWSLETTER796
Feb 28, 2023

SEIN 세인관세법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분기별 반출명세서 첨부 개선 -

『주세법』은 주세의 과세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51호('23.2.23.)에 따라 『주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정 이유

-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류제조자가 매 분기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분기에 속하는 월별 주류반출명세서를 각 1부씩 첨부하던 것을 분기별 반출명세서 1부만을 첨부하도록 개선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Ⅱ. 주요 내용

1. 반출명세서 분기별 첨부(제3조)

- 주류제조자가 매 분기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분기별 반출명세서 1부만을 첨부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월별주류반출명세서 1부(과세표준을 신고하는 해당 분기에 속하는 월별로 각 1부를 말한다)	**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 ---------- --.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반출명세서 1부**

Ⅲ.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년 3월 9일까지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069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붙임2]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Contact

유다예 관세사
T 070-4353-1588
E dyyoo@esein.co.kr

이지은 관세사
T 02-6011-3092
E jelee1@esein.co.kr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